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1. 13 선고 2022나6424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1. 13 선고 2022나64240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8. 23 선고 2021가단287830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대한민국

피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복

담당변호사 박용은

변론종결 2022. 12. 9.

판결선고 2023. 1. 13.

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8. 23. 선고 2021가단287830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와 B 사이에 2017. 6. 28.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. 6. 28. 접수 제1437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결국 제1심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취지이고, 이를 제1심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에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원고는, 채무자인 B는 이 사건 부동산(C호)과 동일한 평형인 D호를 처분한 가격인 208,000,000원보다 훨씬 저렴한 150,000,000원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였고, D호의 매수인인 E는 B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D호를 매수하여 그곳으로 전거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과정에서 E와 이사날짜 등을 조율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을 것이므로, 수익자인 피고는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에도 제1심법원이 피고가 이를 몰랐다고 보아 선의임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갑 3, 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전유부분 면적은 28.64㎡이고 D호의 전유부분 면적은 50.42㎡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인 150,000,000원이 D호의 매매가격인 208,000,000원에 비하여 과소하다고 할 수 없고,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E 등과 관련한 사정을 알았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으며,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객관적인 시가에 따른 매매대금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현실지급 및 피담보채무 인수의 방법으로 모두 정산한 점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인정을 뒤집기에는

부족하다.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권순호, 판사 강희석, 판사 오연정